붙임2 **제출서류 및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❶ (내역사업) 수출지향형

□ 지원목적

○ 글로벌 기술 및 시장 경쟁을 선도할 수출 유망기업 및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

□ 지원규모 : '24년 8억원, 4개 세부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 및 분야 : 지정공모 (총괄과제 1개 RFP)

RFP연번	총괄과제명	세부과제수
7번	경량화된 최대 중량 탑재 무인 AVV 비행체 개발	4
세부1	경량화된 최대 중량 탑재 무인 AVV 비행체 개발	
세부2	기상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물류·화물배송 Corridor 개발 및 안정성 분석 서비스 플랫폼 개발	
세부3	UAM 비행 공역(300~600m) 교통관제 인프라, 교통관제 국지 절차, 장거리 통신체계 구축	
세부4	UAM 산업기반구축 사업 연계 실증 및 기술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수출)**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24.1.1부터 신청접수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 단,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및 조건을 예외로 적용

- 세부과제별 신청하는 주관기관에 해당되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간 합산 불가

<매출 또는 수출 실적 미적용 기업>

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

②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 표준 인증, 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③ 혁신제품 보유기업*

*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에 한하며,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공통 증빙서류 >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3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 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수출실적 <참고1> 참조	직접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서류발급 시 기준기간 : '22년 또는 `23년
	간접	■ 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서 발급 * 서류발급 시 기준기간 : '22년 또는 `23년

* 수출실적 = 직접 수출(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포함) + 간접수출
* 직·간접 수출액은 '22년 또는 '23년 수출실적 근거로 판단

□ 지원기간 및 한도 : 세부과제별 최대 4년,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 최대 20억원, 평균단가 16억원 이내(연 4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4년 이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4.8.1)로부터 '24.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수출	`24.8.1~`23.12.31 (5개월)	`25.1.1~`25.12.31 (12개월)	`26.1.1~`26.12.31 (12개월)	`27.1.1~`27.12.31 (12개월)	`28.1.1~`28.7.31 (7개월)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6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00	11	97	108	308
2차년도	333	18	162	180	513
3차년도	400	22	194	216	616
4차년도	400	22	194	216	616
5차년도	267	15	129	144	411
합계	**1,600**	**88**	**776**	**864**	**2,464**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64.9**	**3.6**	**31.5**	**35.1**	**100.0**

❷ (내역사업) 시장확대형(전략형)

□ 지원목적

○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중점 분야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15.6억원, 11개 세부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 및 분야 : 지정공모 (총괄과제 10개 RFP)

RFP연번	총괄과제명	세부 과제수
1번	인공지능(AI)과 오가노이드 기반 피부질환 치료제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4
2번	MEMS 공정 및 MEMS 공정 대체 3차원 미세 프린팅 공정 기술을 활용하고 자동 조립기술을 접목한 100GHz 및 Pitch ≤ 500㎛ 사양의 6G Test Socket 개발	3
3번	혁신 항암신약 개발 코어 플랫폼인 면역세포 분획 강화 인간화 PDX 개발	4
4번	일괄진동형 파력 발전 모듈과 발전 부교가 연결된 부유식 방파제의 유선 전력 송전 시스템 개발	4
5번	반려동물 유전체 빅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4
6번	펫(pet) 헬스케어를 위한 저진동 캐리어 및 AI 영상처리기반 저선량 X-Ray 시스템 개발	3
8번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국내·외 K-Dental 플랫폼 구축 및 사업화	3
9번	폐기물/폐액 발생이 저감된 폐배터리의 재활용 및 고순도 유가금속 회수 기술 개발	3
10번	중·소규모 건설현장 투입·활동 데이터 기반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플랫폼 및 안전관리 실증 기술개발	3
11번	무전원 미세전류 발생을 통해 상처치유를 가속화하는 2 mm 이하 초박형 일회용 전자약 밴드 개발	3

* 총괄과제별 세부과제는 붙임1 참고

□ 지원대상

○ **(공통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전략형)**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신청하는 주관기관에 해당되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간 합산 불가

□ 지원기간 및 한도 : 세부과제별 최대 2년, 6억원 이내

* 최대 6억원, 평균단가 5.7억원 (연 2.85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4.8.1)로부터 '24.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하반기	`24.8.1~`24.12.31(5개월)	`25.1.1~`25.12.31(12개월)	`26.1.1~`26.7.31(7개월)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42.5	5	43	48	190.5
2차년도	237.5	8	72	80	317.5
3차년도	190.0	7	57	64	254
합 계	**570**	**20**	**172**	**192**	**762**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4.8**	**2.6**	**22.6**	**25.2**	**100.0**

* 연구개발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7억원(2.8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단,「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 가능

* 수출지향형 과제는 IP R&D 전략수립 지원 필수 이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이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 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을 채용하여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합산하여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연구 개시 시점 일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여 정부지원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既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 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금 비율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3] 참고

○ 서면평가 後 대면평가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동일·유사한 기존 기술(특허)의 존재 여부 및 차별성 선행기술조사

* 선정평가 시 신청과제와 기존 특허 간 유사·차별성 검토 진행

□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수출역량, 기술개발 보유 역량,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차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text{종합평점} = \frac{\text{선정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4>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 제출서류

* 접수는 컨소시엄 단위로 총괄기관이 진행합니다.(선정 시 세부과제별 접수 및 협약진행)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세부과제별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필요 서류 제출

<제출서류>

별지	서식 명	비 고 (사업별 제출 여부)	Page
1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8.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필수	-
2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세부 과제별 작성하여 한 파일로 업로드
3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4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필수	
5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 청년인력 의무채용 해당 시 제출 필수	해당시	
6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7	컨소시엄형R&D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필수	
8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필수	
9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필수	
10	기타 증빙자료 (직·간접 수출액 실적, 수출 실적 예외 조건 적용 과제에 한하여 1)삼극특허, 국제표준·인증 획득, 국제전시회 수상실적, 2)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브랜드K 인증서,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등 제출)	해당시	

□ **(필수) 과제 선정 시 「지식재산(IP) 전략수립(전주기지원형)」 지원**

○ **(지원대상)** “수출지향형” 선정 중소기업

○ **(지원내용)** 경쟁사 특허 침해 위험 대응, 대체기술 및 신기술 R&D 정보 제공, 개발된 기술·제품 결과물 보호, R&D·IP 인력 역량 제고 지원

○ **(지원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비용(30백만원(부가세별도))을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3~4차년도 과제수행 중 필요 시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추가 지원 가능

5.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시스템	SMTECH	SMTECH를 통한 신청·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SMTECH 콜센터 1357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2-3287-4336 044-201-0004,005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참고 1 수출실적 확인 및 발급방법

구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실적 발급구분	직접수출	- 직접수출 - 간접수출 (제조사 用)	간접수출
사이트주소	https://membership.kita.net/	http://bandtrass.or.kr/	https://www.utradehub.or.kr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신고필증	별도 필요없음	내국신용장 사본 구매확인서 사본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빙 사본
비용	무료	건별 상이	무료
처리기간	- 실물수출 건 당일발급 -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무형수출 건 약 3~7일 소요	- 실물수출 건 1~2일 소요 - 무형수출 건 진행하지 않음	3영업일 이내
전화번호	1566-5114	02-2140-0740	1566-2119

* 상기 내용은 발급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고 2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내용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개요

○ (지원개요) 국내·외 핵심 특허 도출, 수출 시장 중심의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 및 해외 시장 IP 권리 확보 등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비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액 현금으로 부담(연구비 중 R&D 연구활동비)

구분	IP 전략 수립지원
지원 비용 (R&D 예산)	3,000만원(부가세 별도)
지원 기간	R&D 기간 내 약 2.5개월 지원
지원 내용	**• 시장·기술동향 조사 및 핵심 기술 특허 DB 확보** **• 수출 시장 중심의 선진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 및 특허 권리 대응** - 우리 R&D 결과물에 대한 경쟁사 특허 **비침해 논리 개발** - 경쟁사 특허의 흠결이나 약점(선행 문헌 존재, 특허 명세서, 절차 오류 등)을 추적하여 핵심 특허를 없애는 **무효화 논리 개발** -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변경을 최소화하여 경쟁사 특허 권리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회피 설계 방안 마련**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보유 특허 보강 및 신규 특허 확보 지원** - 기존 보유 IP를 분석하여 권리 범위 구체화, 확장 등 **보강** - 권리범위가 넓고 강력하게 설정되어 경쟁사들의 모방품이 그 권리 범위를 회피하거나 빠져나가기 어려운 **강한 IP 창출**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내 인력의 IP 역량 강화 교육 등 IP 인프라 지원**

□ IP 전략 수립지원 결과

지원 전	지원 후
개별 유효 특허 분석 데이터 부족	R&D 관련 특허 RAW 데이터 선별을 통한 유효 특허 선별 및 정량 분석
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분석 미흡	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특허 분쟁 예방
R&D 과제 관련 IP 보유 미흡	R&D 과제 관련 전략적 특허 창출 계획 수립
R&D 과제 종료 후 특허 출원 진행	R&D 1년차부터 특허 조기 출원 가능
온라인 및 집체교육 등 획일화된 교육	권역별 맞춤형 IP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IP 인프라 구축
해외 특허 보유 미흡	해외 특허 창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에 지원되는 IP 전략 수립지원 내용(IP Needs)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음

□ 기대 효과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필요한 IP 전략 지원으로 다양한 연계효과 도출

경쟁사 핵심 특허의 자사 기술 적용 및 활용

○ 글로벌 선도 경쟁사의 최신 R&D 현황 및 벤치마킹
○ 핵심 기술에 대한 R&D 이슈 또는 특허 분쟁 해결 방안 도출

지재권(IP) 창출 역량 향상

○ 국내외 영업, 제품(기술) 납품을 위한 보증조건으로서의 기술 가치 확보

신규 경영 전략 발굴

○ R&D·제품 시장 트렌드 파악을 통한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가능

<IP 전략 수립지원 지원 절차>

구분	내용	세부내용
R&D 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R&D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o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이 R&D 과제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o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간 R&D 과제 협약 체결(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등)
IP 전략 수립지원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IP 전략 수립지원(내용, 절차 등) 설명회 개최
IP 전략 수립지원 협약	IP 역량진단	o 특허전략전문가(PD)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사전 현장 방문 및 IP 전략 수립지원 과업 범위 협의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협약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납부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간 IP 전략 수립지원 별도 협약체결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납부 * R&D 연구개발비 내 연구활동비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예정
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 전략 수립지원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 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IP 전략 수립지원 밀착 지원	o 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o 최종보고회 개최 및 전략보고서 제공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